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75호 2013년 5월 30일(목)

공 고

○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3 - 351호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조례』로 변경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법 근거 마련 (제8조, 제9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운영관련 조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 시행규칙 : 협의회 구성 인원 9인 이내, 해촉근거 및 운영방법 명시

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 (제14조)

○ 대규모점포 개설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제14조의2)

○ 영업규제 제외, 농수산물 매출비중 51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로 상향

○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 오전 0시~8시 → (개정) 오전 0시~10시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음.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소재지 변경 및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 시 변경등록 제한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6.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속초시장(참조 :희망일자리추진과장 / ☎ 639-2717 / FAX 639-2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제1항"을「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로 하며,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를 따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을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 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의2제1항 중 “시 소재 대규모점포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하고,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8시”를 “10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제2호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는 속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의 내용 중** “정한다”를 “정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의 내용 중** “과세증명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의 내용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7.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조제4호 ..... 4.“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 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 6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를 따른다. ① ~ ⑤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나. 시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 6.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 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1. ~ 9.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 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계획서 ② ~ ⑤ (생략)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 준대규모 점포 ....)는 ....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시 소재 대규모점포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55퍼센트 ....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제 2호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는 속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 정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도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
제 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 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